

필요한 경우
가토제공·특경·회계(사.연)

기안용지
(전화: 731-6371-3)

분류기호 문서번호	간행30084-1070	시 장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⑤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 장	
시행일자	86. 11.	시 장	
보조 기관	건설관리국장 전결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계장		
기안책임자	박종수	문서 통제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의회	시 장
제목	중기정비업체 행정처분	공고제 11/20 호	
(제 1안) 내부결재			
제목 감음			
1. 내무부 특수(2)2311-13898(86. 10. 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기관리법 제 12조의3에 따라 종합중기정비업체에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점검함에 있어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중기소유자의 공장에 점검기자가 출장)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를 정기점검한 업체에 대한 통보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을 실시한 바,			
219			
3. 치안본부의 수사기록과 청문 결과는 중기 소유자의 시설을 활용하여 본해점검및 시동상태를 확인 점검한 후, 제동장치 점검시 시험기에 의거 양부를 결정하지			

1986. 11. 20
1986. 11. 20
시정수업서

1505-25(2-1)일(1)장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85. 10. 29.

필요 시
가토제공·특경·회계(사.인)

기안용지
(전화: 731-6371-3)

분류기호 문서번호	간행30084-1070		시	장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⑤ 3. 1.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86. 11.			
보조 기관	건설관리국장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계장			
기안책임자	박종수		문서 통제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의회	시 장
제목	중기정비업체 행정처분		공고제 11/20 호	
(제 1안) 내부결재				
제목 가 음				
1. 내무부 특수(2)2311-13898(86. 10. 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기관리법 제 12조의3에 따라 종합중기정비업체에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점검함에 있어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중기소유자의 공장에 점검기자가 출장)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를 정기점검한 업체에 대한 통보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을 실시한 바,				
				219
3. 치안본부의 수사기록과 청문 결과는 중기 소유자의 시설을 활용하여 본해점검및 시동상태를 확인 점검한 후, 제동장치 점검시 시험기에 의거 양부를 결정하지				

1986. 11. 20
1986. 11. 20
지정국인사

1505-25(2-1)일(1)장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85. 10. 29.

않고 제동거리에 의한 계산식으로 산출 점검하는 등 점검자의 기술수준에 따라 점검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에 의한 중기정기점검에는 중기의 점검부위와 점검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점검부위별 점검방법및 점검시 사용설비 등이 세부 규정되어 있지않으므로 동 점검을 부정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 27조의 4, 5에 의한 정기점검의 절차나 점검기부의 작성보고에도 위반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4. 동 정기점검이 기술적으로는 적정하였다 하더라도 허가된 시설이외의 장소에서 출장하여 정기점검한 사항은 경미한 점검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동 업체의 기정비업을 "1월간 정지"처분하고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중기정비업체 행정처분 내역

어 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사 유	근거법규
종합중기	서울중공업	박민근	도봉구 창동	영업정지	허가장소의	중기관리법
정비업(허가 제 3호)	주식회사		135 - 5.	1월(86.11.22 -12. 21)	출장점검	제16조 제1항

참 부; 1. 청문서 3부.

2. 공고 "안" 1부. 끝.

(제 2안) 220

수 신 도봉구 창동 135-5. 서울중공업주식회사 대표 박 민 근.

계 목 갑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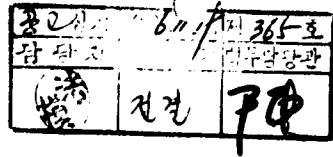
1. (제 1안) 제 1항 이기시행.	
2. 귀 업체는 종합증기장비업체로서 증기를 정기 점검함에 있어	
허가장소외에 출장하여 정기점검한 바, 이는 증기관리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증기를 점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증기 장비임을 ^{허가장소} 정직처분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 업체에서 보유한 증기장비업 허가증을 86. 11. 20. 까지	
건설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1안) "제 4의 가" 이기시행.	
3. 또한 이 처분은 행정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며 행정판 청구의 재결청은	
국무총리이며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심판 청구의 기간은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제 3안) <i>ps</i>	
수 신 공 보 관	발 신 건설행정과장
제 목 시보 게재 의뢰.	
1. 증기관리법을 위반한 증기장비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 ^기	
시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1505-25(2-2) 일(1)을
85. 9. 9.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 2급 60g /㎡
가 40-41 1985. 10. 29.

첨 부. 1. 공 고 안 1 부. 끝.

22/1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증기정비업체 행정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증기를 정기 점검한 증기정비업체에 대하여
 증기관리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정지처분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1986. 11.

서울특별시장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근거법규
종합증기 정비업(허가 제 3 호)	서울중공업 주식회사	박민근	도봉구창동 135-5	영업정지 1월 (86.11.22- 86.12.2/)	허가장소외 출장정기점검	증기관리법 제16조 제1항